

# 조 정 신 청 서

접 수 인

신 청 일 2000.00.00.

사 건 명 건물인도 등

신 청 인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○○구○○길○○(우편번호○○○-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ㅇㅇ구ㅇㅇ길ㅇㅇ(우편번호ㅇㅇㅇ-ㅇㅇ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0 . . .

조정기일소환장 통

위 서류를 영수함

20○○. ○. ○. 신청인○○○(서명 또 는 날인)

조정신청사항가액 금 6,000,000원 인 지 대 금 3,000원 송 달 료 금 32,500원

(인지첩부란)

### 신 청 취 지



- 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상가 ○○○.○㎡ 중 별지도면 표시 가, 나, 다 ,라 가,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.59㎡를 인도하고 20○○. ○. ○.부터 명도 할 때까지 매월 금 500,000 원을 지급한다.
- 2.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.

#### 신 청 원 인

- 1. 신청인은 20○○. ○. ○. 피신청인과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 건물 중 별지기재 도면과 같이 좌측 방1칸, 사무실1칸을 임차보증금 5,000,000원, 월임료 금 400,000원,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임차한 뒤 ○○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피신청인은 20〇〇. 〇. 〇.부터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임료 금 400,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, 신청인은 지금까지 임차보증금에서 월임료 를 충당하기로 하고 20〇〇. 〇. ○.까지 신청인에게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라고 20〇〇. 〇. ○.자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바 있으나, 피신청인은 그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임차목적물의 인도 및 임료의 지급을 명백히 거절하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임차부동산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이는 많은 시일이 걸리므로 20〇〇. 〇. ○.부터 인도 받을 때까지 임차보증금 5,000,000원을 월세로 환산한 매월 임료 금 500,000원 상당액을 그 손해로 청구하고자 합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임대차계약서

1. 갑 제2호증

통고서(내용증명우편)

1. 갑 제3호증

월임료미납확인서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1통1. 건축물대장1통1. 신청서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

2000. 00. 00.

위 신청인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# ㅇㅇ지방법원 귀중



# 도 면

(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상가 ○○○.○㎡ 평면도)

라 다			
	フト	나	
라 다	1	-1	
라			
라			
라			
라			
라			
라			
라			
라			
라			
라 다			
라			
라 다			
라 다			
라 다			
라 다			
	라	다	
	- 1	1	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 기 간	○○년(☞소	멸시효일람표 <b>^^</b>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 법규 민사조정법					
불복절차 ·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 및 기간 터 2주일 이내(민사조정법 제34조)						
비용	·조정수수료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	
• 민사조정법 제30조,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,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,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 33690 판결).						

#### ※ (1)관할법원(민사조정법 제3조)

- 가.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함.
  - 1.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
  - 2.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
  - 3. 피신청인의 근무지
  - 4.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
  - 5. 손해발생지
- 나. 조정사건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음.
- 다.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 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조정신청